

의안번호	2212031
의 퇴 인	추경호 의원
회 답 일	2025.10.21.
추계번호	25E418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중소기업 및 금융시장 효율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중소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증권거래세 수는 2026년 972억원, 2028년 1,089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3,108억원(연평균 1,03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증권거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연장 (안 제117조제2항제1호)	-972	-1,047	-1,089	-3,108	-1,03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
1	제117조(증권거래세의 면제) 제1항	○ 중소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 <table><tr><td>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</td><td> － 벤처투자회사·창업기획자·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·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(지분) 양도 － 신기술사업금융업자(투자조합)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－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·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－ 벤처투자회사,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이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양도 － 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 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</td></tr><tr><td>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</td><td> －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－ 개별 주식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－ 주식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</td></tr></table>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	－ 벤처투자회사·창업기획자·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·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(지분) 양도 － 신기술사업금융업자(투자조합)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－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·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－ 벤처투자회사,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이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양도 － 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 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	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	－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－ 개별 주식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－ 주식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	－
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	－ 벤처투자회사·창업기획자·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·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(지분) 양도 － 신기술사업금융업자(투자조합)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－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·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－ 벤처투자회사,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이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양도 － 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 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						
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	－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－ 개별 주식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－ 주식시장조성을 위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17조(증권거래세의 면제) 제1항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계기간 증권거래세수 전망에, 최근의 ‘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액/증권거래세수’ 비율을 곱하여 추정
 - 증권거래세수는 증권거래대금(명목GDP, 금리 등 거래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¹⁾) 등을 반영해 추정, NABO(2025.10.))에 증권거래세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금액임
 - 최근(2024년) ‘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액/증권거래세수’의 비율이 추계 기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2024년 조세지출액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74억원, 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567억원 수준
 - 2024년 ‘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액/증권거래세수’ 비율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의 경우 0.6%, 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의 경우 1.2% 수준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~2029」, 2025.9.30.

[표 2] 증권거래세수 대비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액의 비율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
증권거래세수(A)	63,029	60,803	47,602
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액(B)	137	130	274
－ 비율(B/A)	0.2	0.2	0.6
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액(C)	1,043	1,198	567
－ 비율(C/A)	1.7	2.0	1.2

- 중소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증권거래세수는 2026년 972억원, 2028년 1,089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3,108억원(연평균 1,03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증권거래세수 전망을 기준으로, ‘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액/증권거래세수’ 비율을 반영해 추계
 - － 증권거래세 전망(NABO, 2025.10.): '26년 5.5조원, '27년 5.9조원, '28년 6.2조원
 - ‘증권거래세 면제 조세지출액/증권거래세수’의 비율은 2024년 수준이 추계기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28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효율화·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117조제1항제1호)	-972	-1,047	-1,089	-3,108	-1,036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